

의안번호	제 19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66 회)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범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
----------	-----

발의연월일 : 2007년 12월 3일

발의자 : 이범윤, 박영웅, 장주식
임현, 최광옥, 최미애,
심홍섭, 이기동(8인)

□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
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안 제2조)
- 나.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5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라 함은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자단체”라 함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발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